

# 전자책(eBook)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유통에 관한 제휴계약서

SCM 등록을 위한

아이디: \_\_\_\_\_

패스워드: \_\_\_\_\_

계약업체 : \_\_\_\_\_

2017 년 월 일

## 한국이퍼브 사업 및 서비스 모델

구분	플랫폼	배분율	진행유무
B2C	예스24	바로 서비스 가능한 파일 제공시 70% 수정이 필요한 파일 제공시 60%	○
	알라딘		○
	반디앤루니스		○
B2B	도서관 및 기업체	50%	
B2BC	원스토어	50%	
	네이버		
	그 외 신규업체		
미리보기 및 본문검색	B2C/B2B/B2BC와 동일	무료서비스 10% 제공	○
연재	부속합의서 추후 작성		
대여			

## 서비스 계약 기간

구분	기간
계약 기간	2년
자동 연장	1년
서비스 종료시 유예 기간	60일

## 전자책(eBook)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유통에 관한 제휴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함)와 (주)한국이퍼브 (이하 "을"이라 함)는 '전자책(eBook)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유통에 관한 제휴계약서'에서 필요한 상호 공동 협력과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전자책(eBook) 및 디지털컨텐츠 제작, 유통에 관한 제휴계약서
2. 계약 기간: 계약일부터 2년
3. 계약 범위: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 판매, 유통을 허용한 전자책 및 디지털컨텐츠를 제 3의 판매 채널을 통하여 판매, 유통함을 허용한다. "갑"은 "을"과의 전송권 계약만으로 각 판매 채널의 판매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단, 보안과 정산투명성을 위하여 컨텐츠 저장 장소는 '을'로 일원화 한다.
4. 기술 협력: "을"은 양사간 협의 하에 선정된 제작/솔루션 업체를 통해 컨텐츠 제작 전반에 대한 내용설명 및 교육을 "갑"에게 적극 지원하며, "갑"은 원활한 제작/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5. 본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휴협력 세부사항'에 명시된 조항을 따르기로 한다.

2017년    월    일

갑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대표: _____ (인)
을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2층  상호: 주식회사 한국이퍼브  사업자등록번호: 110-81-87716  대표: 김 기 호 (인)

## 제휴협력 세부사항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전자책 및 디지털컨텐츠를 제작, 판매, 유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특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 밖의 용어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과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1. '전자책'(eBook)이란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될 수 있는 저작물이 디지털데이터 형식으로 전자 기록매체나 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도서를 총칭한다.
2. '디지털컨텐츠'(digital contents)란, 을이 Web 데이터베이스(Web DB), 모바일용 콘텐츠, 음원서비스(오디오북, MP3 서비스, 토크북, TTS 등), 뉴미디어 서비스, 요약본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도서본문검색 서비스 등 기타 판매 및 서비스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 파일을 의미하며, 향후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Web 데이터베이스(Web DB)'는 Web 과 을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켜 이용자들이 특정 웹 솔루션을 통해서 Web 에서 “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기업 등에 제공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특정 웹 솔루션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나) '모바일용 콘텐츠'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등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휴대용 전화기, PMP, 휴대용 단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책 및 디지털컨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다) '음원 서비스'는 오디오북, MP3 서비스, 토크북(talking book), TTS(Text To Speech)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① '오디오북'은 도서 데이터를 그대로 또는 일부 내용을 재가공·편집하여 디지털 음성 파일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MP3 서비스'는 도서 및 도서 관련 오디오콘텐츠(부록 Tape, CD 등) 등을 MP3 파일, MPEG Audio Layer-3 파일 등의 오디오 압축 디지털 파일로 변형한 것 또는 이를 오디오 재생이 가능한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③ '토크북'은 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의 독서를 돕기 위해, 도서데이터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TTS(Text To Speech)'는 텍스트를 기계장치를 통해 음성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라) '뉴미디어 서비스'는 기존의 미디어 채널이 아닌 DMB(위성 및 지상파), 인터넷 전화, WiBro, IP-TV, 휴대전화망(2.5G, 3G, 4G) 등 새로이 등장하는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마) '요약본 서비스'는 발췌나 요약, 재구성 등의 방법으로 도서의 내용을 일정 분량으로 압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바) '미리보기 서비스'는 모니터나 여러 종류의 단말기를 통하여 도서 내용의 10% 를 독자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사) '도서본문검색 서비스'는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이용에 제공된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검색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제 3 조 (보증)

1. "갑"은 본 계약과 함께 "을"에게 제공할 모든 콘텐츠(이하 "본 계약 콘텐츠"라 함)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과, "본 계약 콘텐츠"에 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갑은 갑이 보유한 본 계약 콘텐츠의 저작권 등 이용권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3 개월 전까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의 저작권 등 이용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3. 본 계약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도서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등 수익분배는 "갑"의 부담으로 하여, "갑"이 지급한다.
4. "본 계약 콘텐츠"에 관한 "을"의 제작, 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을"이 제 3 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상 소의 제기 등 기타 이의제기를 당한 경우, "갑"은 "갑"의 비용으로 "을"을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을"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은 본 계약 콘텐츠를 제작, 유통함에 있어 불법복제 혹은 해킹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6.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 방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갑"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판매, 유통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제 4 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2 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만료일 3 개월 이전까지 "갑"이나 "을"이 서면으로 본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된다.

#### **제 5 조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권리)**

1. "갑"은 본 계약기간 동안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편집이 완료된 디지털 파일 상태의 도서데이터와 실물 도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2. "을"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로 제작된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다. 단 "을"의 소비자에게 기 배포, 판매한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존속한다.

#### **제 6 조 B2C 수익분배**

본 계약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및 판매 방법, 이용료 및 이용료 분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은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의 정가를 "갑"의 재량으로 책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책정한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의 정가를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단, "갑"이 책정한 정가가 "갑"과 계약관계에 있는 "을"이외의 업체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갑"과 "을"은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출간 이전에 별도의 협의에 따라 전자책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을"이 할인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갑"과 협의 후 할인 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협의 없이 "을"이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

가) "갑"이 "을" 이외의 업체에게 할인 판매를 허용한 경우, 같은 비율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나) "을"의 비용으로 "갑"의 손실을 면책한 경우에는 "을"의 할인 정책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3. 구매자가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여 "을"에게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판매가(최종소비자가)의 70 %를 지급한다. 단, "을"이 "갑"의 요청으로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를 수정하여 전자책 파일을 제작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판매가(최종소비자가)의 60 %를 지급한다. "을"이 제작한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의 판매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제6조 3항에 의거 "을"의 비용으로 제작을 진행한 콘텐츠를 "갑"이 "을"에게 구매하여 전자책 파일을 제공하면, 즉시 배분율 수정을 진행 한다.

"을"이 제작한 파일을 구매 하지 않고 "갑"의 비용으로 제작을 진행한 전자책 파일을 재 제공 시,

"을"이 최초 제작에 투입한 비용을 감가상각 할 시기까지는 기존 배분율을 유지한다.

#### **제 7 조 B2B 판매 서비스 및 수익 분배**

1. B2B 정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을"은 "갑"이 통보한 B2B 정가로 B2B 판매를 진행한다. 단, "갑"의 통보가 없을 경우 "을"은 B2C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을"이 본 계약 콘텐츠를 B2B 용으로 서점, 도서관, 기업 등 단체에 판매할 경우 "을"은 "갑"에게 B2B 정가의 50%를 지급한다.
3. 무료 도서의 경우 "기증"의 형태로 무료 납품하거나, 위 1.에서 "갑"이 정한 B2B 정가를 기준으로 판매한다.
4. "갑"은 저자와의 도서계약이 끝날 경우 "을"에게 납품서비스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갑"은 "을"이 납품서비스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90 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 8 조 B2BC 판매 서비스 및 수익 분배**

1. "을" 이 본 계약 콘텐츠를 b2bc 제휴를 통하여 판매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전자책 및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최종소비자가)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별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속합의서를 별도 작성 한다.)

#### **제 9 조 (전송권 사용료 지급 및 보고)**

1. "을"은 위에서 정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전송권 사용료를 1 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마감된 판매분에 대하여 익월 25 일까지 현금(계좌이체)으로 결제한다. 기 정산 마감된 판매분 중 매출의 취소, 철회, 해지, 해제가 발생한 경우 익월 정산에 반영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매출통계를 "갑"이 원활히 조회할 수 있도록 SCM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3. "갑"은 "을"에게 익월 정산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10 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제 3 조에 의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내 및 국외의 제 3 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통보하며 "갑"과 협의 하에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제 3 조 2 항의 저작권 등의 이용권 만료에 대한 통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비용 및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4.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을"이 국내 또는 국외의 제 3 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중재절차 등의 법적 분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즉시 배상한다.

### **제 11 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노동쟁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체 또는 상대방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갑" 또는 "을"은 위 1 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의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정도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 조 (계약의 해지 및 보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 계약 위반의 상대방 당사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위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나)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본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3. 위 1. 또는 2.의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3 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절차)**

1.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이 제공한 '저작물'의 신규 사용을 중단한다.

2. "갑"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을"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기간을 60 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을"이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경우 기존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전송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 **제 15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갑"과 "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제 16 조 (관할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제소할 경우 제 1 심 법원은 "갑"(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 17 조 (부칙)**

1. 본 계약 및 기타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법 및 민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조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 통을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